

[별표 6]

우수제품 일반지정 연장 사유 및 기준

호	연장 사유	연장 기간	기준
1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신규지정기업 : 지정기간 중 수요기관 납품실적(우수제품)이 있는 경우 · 기지정기업(아래 요건 모두 충족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지정기간내에 10건 또는 30억 이상의 수요기관 납품실적(우수제품)을 보유 나. 지정기간내에 납품검사 불합격 및 품질점검 부적합이 없음 다. 지정기간내에 수요기관 만족도 평가 평균점수가 90점 이상(우수등급) 	1년	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일
2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가 또는 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최근 1년간 해당 우수제품과 동일 품명인 제품의 수출실적이 최근 1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공공조달실적 대비 3% 이상인 경우 나. 최근 3년간 해당 우수제품과 동일 품명인 제품의 수출실적이 최근 3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공공조달실적 대비 3% 이상인 경우 	1년	
3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가 또는 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최근 3년간 해외 수출 총 실적이 4백만불 이상인 경우 나. 최근 3년간 해외 수출 총 실적이 총매출 대비 30% 이상인 경우 	1년	
4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가 또는 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우수제품 지정일 대비 전체 고용인원(지정일 기준) 대비 청년고용증가 인원이 3% 이상인 기업 나. 우수제품 지정일 대비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이 5% 이상인 소기업 및 4% 이상인 중기업 	1년	
5호	제4호에 의하여 연장 또는 연장신청을 한 경우라도, 우수제품 지정일 대비 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이 20% 이상인 소기업 또는 15% 이상인 중기업이면서 (별지 제3호의 5서식)에 따른 기간 동안 고용한 신규 채용인력의 95%이상이 정규직인 경우	1년	
6호	연장 신청 직전 연도 총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 비율이 4% 이상인 경우 (단, 신규지정기업의 경우 총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비율이 3%이상인 경우)	1년	지정기간 내
7호	지정기간 내 정부부처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및 기타 유관기관 등의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완료한 경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(iris.go.kr) 공모사업 - 중소기업 기술개발 통합 공모사업(smtech.go.kr) - 이외 기관 자체 시행 기술개발 관련 공모사업 (이 경우, 기업이 참여한 공모사업의 내용은 사업공고서 상의 지원내용에 ‘기술개발’로 명시될 경우에 한해 인정)	1년	
8호	품질보증조달물품 B-등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	1년	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일
9호	「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령」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·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여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-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(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·인가·면허·등록·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)	1년	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일

- ※ 연장사유가 중복하여 해당될 경우 최대 3년의 범위에서 합산한다.
- ※ 기산일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.
- ※ 품명은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의미한다.
- ※ 지정기간(연장기간 포함) 중 우수제품 관련 소송 등에 승소한 경우 우수제품 업체가 지정기간 소급을 신청할 수 있음
- ※ 지정연장 신청 시 각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.
- ※ 제7호 관련 제출서류 : 사업공고서, 해당 사업의 참여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(사업결과보고서, 주관기관의 공문, 인증 등)
- ※ 평가항목 중 ‘품질보증조달물품’은 우수제품 지정연장 신청일을 기준으로 유효하게 획득한 경우를 말한다.